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393호
2. 발 의 자 : 이희원 의원
3. 발의일자 : 2025년 2월 3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## II. 제안이유

-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.

## III. 주요내용

- 교육감 등의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교육감의 헌혈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(안 제4조)
-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#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3. 입법예고 : 2025. 2. 11. ~ 2. 15.(의견: 없음)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93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헌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지난 10년간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,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
  - 더욱이 급속한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헌혈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.
- 반면, 지난 5년간 혈액공급 대비 헌혈 실적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수술 등 필요한 혈액공급률은 60%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연도별 헌혈실적 대비 수혈용 혈액공급 실적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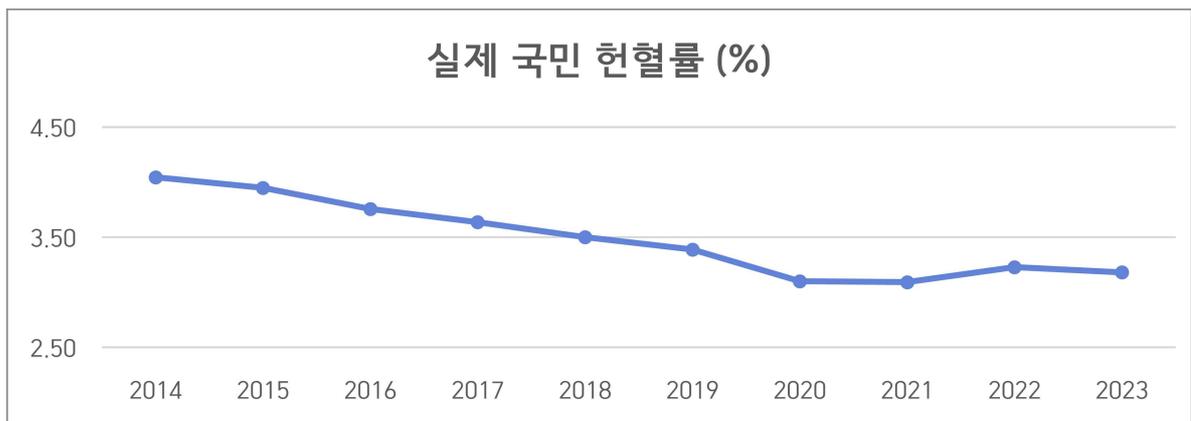
연도	헌혈실적 (건)	혈액공급 (unit)	혈액공급률 (%)
2019	2,613,901	4,354,132	60.0%
2020	2,435,210	4,129,790	59.0%
2021	2,426,779	4,235,541	57.3%
2022	2,445,003	4,176,012	58.5%
2023	2,541,446	4,248,924	59.8%

1) 출처: 통계청 혈액정보통계

[표-1] 연도별 헌혈자 수(2014~2023)<sup>2)</sup>

연도	총 헌혈실적 (건)	총 인구 (명)	헌혈률 (%)	헌혈자 실인원 수(명)	헌혈자 증감률 (%)	실제 국민 헌혈률(%)
2014	3,053,425	50,423,955	6.06	1,696,095		4.43
2015	3,082,918	50,617,045	6.09	1,668,424	△1.6	4.31
2016	2,866,330	50,801,405	5.64	1,596,294	△4.3	4.07
2017	2,928,670	51,446,201	5.69	1,545,022	△3.2	3.92
2018	2,883,270	51,635,256	5.58	1,479,867	△4.2	3.75
2019	2,791,092	51,849,861	5.38	1,423,610	△3.8	3.61
2020	2,611,401	51,829,023	5.04	1,281,773	△10.0	3.25
2021	2,604,437	51,638,809	5.04	1,272,178	△0.7	3.24
2022	2,649,007	51,439,038	5.15	1,327,587	4.4	3.41
2023	2,776,291	51,325,329	5.41	1,300,774	△2.0	3.35

[그림-1] 연도별 실제 국민 헌혈률(2014~2023)



○ 이와 같은 혈액 보유량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 헌혈자(헌혈 가능 나이: 만 16세 이상)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0~20대 청년층의 헌혈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, 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이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.

더욱이 헌혈에 대한 부작용 및 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,

2) 출처: 통계청 혈액정보통계

헌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향후 헌혈 참여율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2] 연령별 헌혈현황(2023년 기준)<sup>3)</sup>

(단위: 건, %)

16~19세		20~29세		30~39세		40~49세		50~59세		60세이상	
실적	구성비	실적	구성비	실적	구성비	실적	구성비	실적	구성비	실적	구성비
503,624	18.1	1,024,621	36.9	448,166	16.1	474,966	17.1	272,060	9.8	52,854	1.9

- 참고로 일부 시도교육청 또한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[표-3]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타시도 교육청

교육청명	조례명	공포일자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	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	2024.7.5.
인천광역시교육청	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	2024.9.29.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	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	2024.11.1.
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헌혈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## 나.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

### 1) 조례안의 체계

-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, 그리고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) 출처: 통계청 혈액정보통계

또한 안 제4조는 헌혈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,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실제적 내용에 따라 적절히 순서를 정하고 관련 지침<sup>4)</sup>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바, 형식적 측면에서 조례의 구성 체계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2)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3조는 서울시교육감에게 모든 학생에게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(제1항), 학교장에게는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(제2항)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헌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회적인 헌혈 행사를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을 뿐, 헌혈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

**[표-4] 헌혈 관련 업무 담당부서(서울시교육청)**

부서명	담당업무
체육건강예술교육과	학교 보건업무 총괄 및 학교 단체헌혈 협조 등
민주시민교육과	학생봉사활동과 연계한 학생헌혈 활성화 등
총무과	직원 헌혈참여 관련 행사 등

- 따라서 안 제3조는 헌혈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.

4) '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', 법제처, 2022.8. '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(10판)', 법제처, 2021.12
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1항 중 ‘모든 학생’을 교육 제공의 유연성 확보 및 학교 업무부담 완화를 이유로 규정 중 ‘모든’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 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 2. 13.)

그러나 안 제3조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의미의 임의규정으로, 이는 헌혈을 독려하는 교육이 아니고 헌혈의 가치,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학생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할 것입니다.

### 3)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4조는 헌혈교육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(안 제1항),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(안 제2항)하고 있습니다.
- 이처럼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헌혈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,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.
-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‘업무협약’은 현재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2항제4호의 ‘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’에서 ‘업무협약’내용을 삭제하여 ‘헌혈 홍보에 관한 사항’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 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 2. 13.)

- 그러나 시행계획은 교육감이 수립 주체이며, 이러한 시행계획은 교

육청의 종합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.

- 더욱이 부서별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일 경우 해당 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춰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,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4) 사업(안 제5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5조는 교육감이 현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혈 교육의 운영(안 제1호)과 교육활동 운영(안 제2호), 현혈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 협력 사업(안 제3호)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교육감이 현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,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1호의 ‘교육과정과 연계한 현혈교육 운영’을 ‘교육과정 또는 봉사활동 등과 연계한 현혈교육 운영’으로, 안 제5조제3호의 ‘각종 문화 협력 사업’을 ‘협력 사업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 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2.13.)
- 그러나 봉사활동 또한 현행 교육과정인 ‘창의적 체험활동’에 포함되어 편성<sup>5)</sup>되어 있는바, ‘봉사활동’을 교육과정과 분리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) 현재 교육과정에는 ‘봉사활동’이 ‘창의적 체험활동’에 해당되나, 2022 개정 교육과정(2022년 고시)에는 ‘동아리 활동의 하위 활동’으로 편성되어 있음

- 또한 헌혈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단순히 ‘협력 사업’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‘각종 문화 협력 사업’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업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 헌혈은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혈액을 기증하는 것이므로 헌혈교육이 헌혈을 강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.

#### 5) 포상(안 제7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7조는 헌혈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, 기관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헌혈교육에 공로가 있는 대상에게 포상함으로써 동 사업에 관한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여 헌혈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.

-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실질적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포상의 대상을 ‘개인’이 아닌 ‘교직원’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2.13.)

그러나 표창 대상을 ‘개인’이 아닌 ‘교직원’으로 수정하는 것은 대상범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, 특히 학생,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배제하는 위험성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.

더욱이 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도 표창대상을 ‘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’으로 규정<sup>6)</sup>되어 있는바,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별도의 실익

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」  
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명신(2180-826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---

6)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
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"행사"를 포함한다.  
이하 같다.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한다.